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1일, 허종식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3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6.5.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 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5.20.)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허종식의원)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매출액·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인력·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따라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은 수익사업 영위와 이익분배 가능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개인병원과 동일한 수익사업을 수행함에도 이익이 법인에 보유되는 비영리법인이란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의료법인 병원은 주로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 등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 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의료법인을 영위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 법과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위하는 자의 경영여건 및 사업지속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대하여는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¹⁾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으나, 비영리법인으로서 부여되는 혜택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법 개정 여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

일례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일부가 경감되는 혜택³⁾을 누리고 있음.

1)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법」 및 하위법령상 의료법인은 영리 추구가 금지됨. 이처럼 중소기업과 의료법인은 각각 영리기업과 비영리법인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이에 개정안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금혜택 등을 받는 의료법인에 영리기업과 유사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개정안의 입법 취지대로 의료법인이 안정적인 경영여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의 입법 취지대로 비영리 의료법인 등을 영위하는 자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는 경우 현행 중소기업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관련 특례규정의 개정(삭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일례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및 해당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비영리 의료법인 및 해당 의료법인 재직 근로자도 이러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개별 중소기업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둘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중소기업부장관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의료법」에서는 의료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 이외에도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입법 취지대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법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기업과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비영리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법 개정 에 부동의 하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 법률인 「의료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